

• 초 점 •

사료분야의 규제사항과 개선방안



홍 순 찬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이사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해 회의의 과정을 생중계하는 등 범정부적인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민간에서도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표명과 민간의 기대와는 달리 2014년 6월 현재 중앙부처 등록규제 건수는 15,310개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민관합동 규제개혁 T/F팀을 구성·운영해 축산분야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번기회에 사료분야에서의 규제사항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1. 배합사료 범위 및 성분등록 사항을 제조업자 자율로 전환

□ 현 황

현행 사료공정서(농림축산부 고시) [별

표2] 배합사료의 범위 및 성분등록사항(제5조2항 관련)에 따라 배합사료 중 고기소, 젓소, 돼지, 닭, 오리사료의 경우에는 체중 및 성장단계를 기준하여 사료종류별로 사용범위(표1 참조)를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이 주요 축종 배합사료에 대하여 성장단계 등에 따라 성분등록사항을 법률로서 규제한 것은 농가단위에서의 사료의 효율적 이용과 제조업자 등에 대해 일정 수준의 이상의 사료를 제조·공급케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 문제점

주요 가축인 소, 돼지, 닭, 오리의 사료종류별 사용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적용함에 따라 사료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날로 발전하는 축산기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료가공기술 개발 그리고 사양프로그램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사료선택권을 제한받고 있으며 실제 농가에서도

(표 1) 양축용 배합사료의 범위 및 성분등록 사항(예시)

축종	명칭	사용범위	등록성분		기타
			최소량(%)	최대량(%)	
고기소	번식용어린송아지 번식용중송아지 번식용큰송아지	생후 3개월령 이전 3~6개월령 6~12개월령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조회분 조섬유 인	가소화영양소 총량(TDN) 계산치
	종모우 고기소임신우 고기소포유우	13개월령 이후 수소 13개월령~분만 이전 분만~분만 이후 3개월령			
	비육용어린송아지 비육용중송아지 큰소비육전기 큰소비육중기 큰소비육후기	생후 3개월령 이전 생후 3개월령~체중 250kg 이하 체중 250kg~400kg 체중 400kg~500kg 체중 500kg 이상			
젖소, 돼지, 닭, 오리 생략					
말	어린말 육성말 큰말	제조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함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조회분 조섬유 인	

현행 규정대로 급여하고 있지 않는 등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기능성 축산물생산, 농장특성에 적합한 맞춤형사료 생산 및 공급을 통한 농가의 생산성향상과 축산물의 품질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개선방안

양축용 배합사료 중 구체적인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고기소, 젖소, 돼지, 닭, 오리 사료의 사용범위를 말, 양 등과 그 밖의 동물사료와 같이 가축의 성장단계에 따라 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생산토록 개선이 필요하다.

□ 기대효과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사료가공기술과 가

축 생산성이 높은 사양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고 농가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료의 생산·공급 활성화를 통해 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수입신고 대상품목의 축소 또는 제한

□ 현황

사료검사요령에 의거 수입업자가 사료를 수입할 때에는 검사요령 [별표 5]에 따른 ‘안전성 및 품질검정 대상품목’ 등 228개의 사료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사료의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4월

29일 사료검사요령을 개정하여 수입신고 대상 품목을 모든 사료(사료로 판매·공급·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배합사료·단미사료·보조사료)로 확대하면서 제조업자 또는 사료관련단체가 자가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사료의 경우 수입사료검정을 마친 사료는 수입신고를 면제토록 한 바 있다.

□ 문제점

사료검사요령 [별표 5]에서 수입신고대상 품목을 당초 228개로 제한한 취지는 사료 원료 중 특히 위생·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수입신고토록 한 것으로 모든 사료를 수입신고토록 하는 것은 규제사항의 증가로써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위배되는 조치이다.

더욱이 사료품목을 수입신고품목으로 확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식품에 비해 사료에 대한 안전성 관리수준이 낮은 상황임을 이용하여 부적합 식품 등이 국내에 사료로서 반입·유통될 우려가 높아 오히려 무분별한 원료수입에 따른 국내 사료의 안전성에 위협요소가 될 것이 우려된다.

□ 개선방안

유통사료의 위생·안전성 확보와 관리를 위한 수입신고 대상품목은 면밀히 검토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위생 및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제한하여 신고대상 품목의 축소 및 제한이 필요하다.

□ 기대효과

품질·위생에 관련된 사료품목에 한하여 수입신고토록 함으로서 제조업자 등의 신고의무(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간소화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3. 수입 '사료용근채류' 중 2308호 해당품목의 별도 관리

□ 현 황

WTO 등 다자간협상을 통해 용도세율(양허관세 및 할당관세)이 적용되는 사료원료로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산 조(풀)사료 증산을 목적으로 수입물량을 제한

(표 2) 사료용근채류 품목 개요

H.S No	품 명	관 련 제 품 명
1214.90.1000	사료용근채류	• 사료용 비트(근대, 사탕무 등)
1214.90.9090	기타사료용 식물	• 화본과 목건초(짚)류 - 페스큐, 오차드그래스, 라이그래스, 티모시
2308.00.9000	사료용 식물성물질 식물성 웨이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	• 옥수수사일리지 • 옥수수대펠렛, 속대, 대두피, 사탕수수케인

하고 있는 ‘사료용근채류’는 품목(관세)번호 1214호 2개 품목과 2308호 1개 품목이 바인딩(표2 참조)되어 관리되고 있다.

□ 문제점

품목(관세)번호(H.S No) 2308호로 분류되어 수입되는 품목 중 옥수수사일리지를 제외하고는 국내산 조사료와 경합되는 품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료 세번(1214호)과 동일 쿼터로 묶어 운영함에 따라, 대두피, 옥수수속대 등 2308호에 속하는 원료의 안정적 확보·사용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관리방식은 사료원료의 종류 및 수입국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원료 확보를 통한 유통사료의 생산비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료기업의 새로운 사료자원 개발/확보 노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개선방안

국내산 조사료 산업과 경합이 되지 않는 2308호 해당품목에 대한 별도 배정·운용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관세번호 2308호로 분류되는 품목 중 옥수수사일리지를 제외한 대두피, 옥수수속대 등은 국내 조사료 증산·확대 정책과 전혀 무관한 품목이므로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1214호(풀사료)와 분리하여 물량을 관리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 기대효과

사료기업의 새로운 자원개발 노력을 증진시켜 원료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료원료 다양화를 통한 사료생산비용 절감 및 사료의 생산성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4. BSE 관련 사용제한 품목을 ‘반추동물 단백질’ 또는 ‘포유동물 단백질’로 완화

□ 현황

현행 사료관리 규정 중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의해 소해면상뇌증(BSE)이 우려되어 반추동물용 사료에 사용을 금지하는 품목을 ‘모든 동물성 단백질류’로 규정(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6조)함에 따라 배합사료의 품질개선 및 사료생산비용 절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제6조) 발췌

- 제6조(동물등의 질병과 관련한 사료종류) ①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전단 규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 등’은 소해면상뇌증과 관련이 되는 소·사슴·산양·면양 등 반추동물을 말한다.
- ②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후단의 규정에서 제1항의 동물등에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성 단백질류 (이하 생략)

□ 문제점

현행과 같이 규정함에 따라 어분, 우유유래단백질 등 BSE와 무관한 물질마저 사용을 제한되고 있어 사료제조업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원료사용을 규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종 생산제품(사료)의 사료적(영양적) 가치를 고려할 때 동물성단백질보다 상대적으로 高價(사용량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인 식물성단백질을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원가부담(사료제조비용 증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축우농가의 입장에서든 경제적이면서 고품질의 사료공급을 원할 뿐만 아니라, 한·육우 및 유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모든 동물성 단백질류의 사용금지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사료기업의 자율적인 생산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이 같은 사유로 인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 : Office International des Épizooties)에서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 만을 관리하고 있으며 EU 및 일본은 관련법에 의거 포유동물유래단백질 만을 금지하여 생산사료의 품질향상과 가격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 개선방안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의해 반추동물사료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사료의 범

위를 현행 ‘모든 동물성 단백질’에서 ‘반추동물유래단백질’ 또는 ‘포유동물유래단백질’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 기대효과

소해면상뇌증(BSE)과 관련이 없는 동물성단백질 사용을 통한 사료생산비용 절감 및 가축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5. 사료의 합성수지포장재에 대하여는 “회수재활용 의무이행(ERP)” 대상에서 제외 조치

□ 현황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촉법) 시행령 개정(‘14.1.28)을 통해 회수재활용 의무대상 합성수지포장재를 기존 음식료품, 세제류, 농수축산물, 의약품등의 포장재에서 모든 제품의 합성수지포장재로 확대함에 따라 사료의 합성수지포장재도 회수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이행방법으로서 재활용의무사업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의무이행을 대행케 하거나 또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등 의무를 직접 이행토록 정하고 있다.

※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RP: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란?

합성수지 등의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의무생산자(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임.

□ 문제점

합성수지의 제조업자가 아닌 사용자인 사료제조업자에게 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이행 또는 분담금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인 동시에 특히, 가축질병의 예방 및 확산에 심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사료 포장지에 대한 회수·재활용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포장지 회수를 위해 농장출입이 잦아질 뿐 아니라 질병의 오염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포장재들이 사료관련 시설로 재 반입되어 활용될 우려가 높아 시행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같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제도를 사료 제조업자 등에게 의무케 하는 것은 결국 사료업체로부터의 세금(분담금) 납부만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합성수지 등의 재활용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사료기업의 경영비용 증가와 농가의 사료비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개선방안

사료공장 등 관련시설과 농가 등의 무리한 사료포장재 회수작업을 통하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가축질병의 확산과 축산 및 사료산업의 경영악화가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사료포장재의 경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기대효과

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과 가축질병의 반복적 발생으로 위축된 축산업 및 사료산업의 경영애로를 다소나마 해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